

알기쉬운 세무상식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이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하이텔로

제공되는 국세청 세무정보를 토대로 정리, 게재된 것이다.

사업을 그만두는 세무종결 절차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했듯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종결절차는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같이 하는 것이 절차도 간편하다. 폐업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월1일 또는 7월1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해야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납부와 같이 소득세도 자진납부 해야 한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폐업신고시 세액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상담도 해준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받는 불이익

가산금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기일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증가산금이 계속 붙어 총 20%가 될때까지 붙어나게 된다. 따라서 납부후 10개월까지 세금을 못내면 총 25%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다만 증가산금은 50만원 미만의 세

금에는 붙지 않는다.) 세무관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되며,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유예도 가능하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때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치료를 받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무신고를 잘못된 경우 바로잡는 방법

수정신고를 하면된다. 수정신고란 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세무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도 할 수가 없다. 수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 부가가치세 :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 다만,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외의 국세 :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의 제출 및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시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수정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하며,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해 당초의 과세

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한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대폭 감면되는데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이다.)

-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면제 (중과소 신고가산세 제외)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

이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과 관련된 애로, 고충사항은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쁘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봉사실의 상담전화 를 이용하면 손쉽게 정확한 세금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충책임처리제'를 실시하는데 처리담당자를 지정, 다른 부서로 넘기지 않고 전담해 해결해 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세금감면을 못 받은 경우
- 직원이 대신 작성해 준 신고서에 날인만 했거나, 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했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 행사, 가정부, 잡역부 등 서민층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과다하게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등이다. 